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40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지배인 C

2. D

변론 종결 2020. 6. 3.

판결 선고 2020. 7. 8.

제 1 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소55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 또는 신품의 미국산 전자기타를 회원들에게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E 카페 'F'(G,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가입한 회원이고, 피고 주식회사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카페의 운영자인 H(닉네임 'T')와 2012.경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카페를 통한 전자기타 구매대금의 수취, H가 조달한 전자기타의 국내 반입 및 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해온 회사이며, 피고 D는 2015. 2.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30.경 H가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J 사(社)의 신품 기타 공동구매 공지글을 보고 위 카페에 'K 1대'의 구매대행을 신청하였고, 2016. 10. 5.경 구매대금으로 119만 원을 위 공동구매 공지글에서 지정한 송금계좌인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계좌(L)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6. 구매대행을 신청한 전자기타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사용 흔적이 있는 중고제품으로서 그 가치가 구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통하여 H에게 전자기타를 반송하고 H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H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한편 H는 2017. 5. 13. 이 사건 카페에 '현 상황에서 카페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신규주문 및 견적 중단 카페 내 글쓰기 기능 정지, 한국 내 연락사무소폐쇄 등을 조치한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게시하고 회원들의 글쓰기 기능을 차단시켰다. 원고는 이에 피고 회사측에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측은 '저도 당황스럽다, 현지와 연락이 안된다, 추후 연락드리겠다'고 답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7,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카페를 통해 전자기타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금을 송금하였지만 신상품이 아닌 중고제품을 수령하였고, 이에 해당 기타를 반환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전자기타 구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회사가 아닌 H가 이 사건 카페를 관리·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H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H는 원고에 대하여 사기의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당시 H의 사용자라고 할수 있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피고 D는 원고에게 H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책임의 근거로 민법 제756조 제2항(사용자책임)과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를 들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자기타 구매대금 상당액 11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6, 12호증, 을 제14호증1)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카페를 통해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사실, 이에 이 사건 카페에는 피고 회사의 사업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카페에서 전자기타를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현금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카페를 통한 전자기타 구매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제1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H는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전자기타 구매대행 판매를 해오고 있었던 점, 2 이 사건 카페에서 오직 H만이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전자기타의 공동구매 글을 게시하거나, 고객들의 견적 요청에 응대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은 '배송담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입금 및 배송 관련 업무, 현금 영수증 발행 및 카드 결제 등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제한적인 사항의 문의에 대해서만 댓글 등을 게시하여 온 점, 3 그 밖에 H가 피고 회사의 임·직원임을 표명하거나 피고 회사의 상호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해온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 회사와 업무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2012. 2. 10.경 '기타 배송방식을 업그레이드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2)에서도 판매자인 본인과 배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 회사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등 카페 회원들에게 자신과 피고 회사를 서로 다른 주체로 구별하여 안내를 해온 점, 4 이 사건 카페에 피고 회사의 사업자정보를 게시한 것은 국내에서의 판매대금 결제가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카페를 통해 전자기타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피고 회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과 함께 갑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도 전자기타의 구매대행을 주관하는 H('M', 'T')와 직구한 기타의 배송처인 피고 회사('N', 'B')를 구별하여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해온 점, 2 원고 또한 문제가 된 전자기타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먼저 H와 이메일을 교환하여 반품을 결정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회사가 그의 명의를 H에게 대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 회사 또는 그의 대표자인 피고 D가 H에 대하여 사용 관계 또는 명의대여 관계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H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H의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하여 결제, 배송 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이 있을 뿐 나아가 H가 피고 회사의 피용자라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배관진, 판사 강민수

1) 피고들이 '을가'호증과 '을나'호증으로 나누어 서증들을 각각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각 제출한 서증들이 그 대응되는 순번의 서증별로 서로 완전히 일치하므로(즉, 을가 제○호증과 을나 제○호증이 완전히 같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호칭한다.

2) 구매대행을 하는 전자기타들의 배송방식을 직접 개별 배송하는 방식에서 한국까지는 피고 회사로 일괄 통관·배송하고, 이후피고 회사로부터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공지글이다.